

202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

-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을 함유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화 되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·처리하고,
-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.

1. 사업 개요

가. 관련법령

- 1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, 제26조
- 2) 「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지침」

나. 신 청 자 : 건축물 소유자,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

다. 신청기간 : 2021.01.11.(월) ~ 02.19.(금) (40일간)

※ 신청 접수는 건축물 소재 읍·면 행정복지센터

※ 추후 잔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소진 시 까지 접수순에 따라 사업 진행

라. 총사업비 : 1,756,000천원

- 1)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: 1,634,000천원
 - 국비 817,000천원, 도비 245,100천원, 군비 571,900천원
- 2)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: 122,000천원
 - 국비 61,000천원, 도비 18,300천원, 군비 42,700천원

마. 사 업 량

- 1)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: 약485가구
 - 주택 450가구, 비주택 35가구
- 2)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: 약20가구

2. 지원기준

가.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

- 1) 지원금액 :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
 - 주 택 : 가구당 최대 3,440천원(규모에 관계없이 적용)
 - 비주택 : 가구당 최대 3,440천원(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)
- 2) 사업대상
 - 주택 및 부속사(축사, 창고 등)의 지붕,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
 - 콘크리트 벽체 기타 구조물 등 철거 처리비용 지원 불가
- 3) 지원 우선순위
 -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
 -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
 - 슬레이트 지붕 처리·개량사업(타 지원없는 사업)
 -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(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)
 - 빈집정비사업(국토교통부 지자체 연계사업)

나.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

- 1) 지원금액 : 가구당 최대 6,100천원(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)
 - ※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사업 병행조건
- 2)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내용
 - 사업대상 :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 개량
 -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 가능
 -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시공하지 않음
 - 거주자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지붕 개량 가능
- 3) 지원 우선순위
 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
-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
- 독거노인가구

다. 지원제외

1) 공통

- 지방세, 환경개선 부담금,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
- 당해연도 1가구 1사업 추진 원칙

※ 개인이 철거·보관·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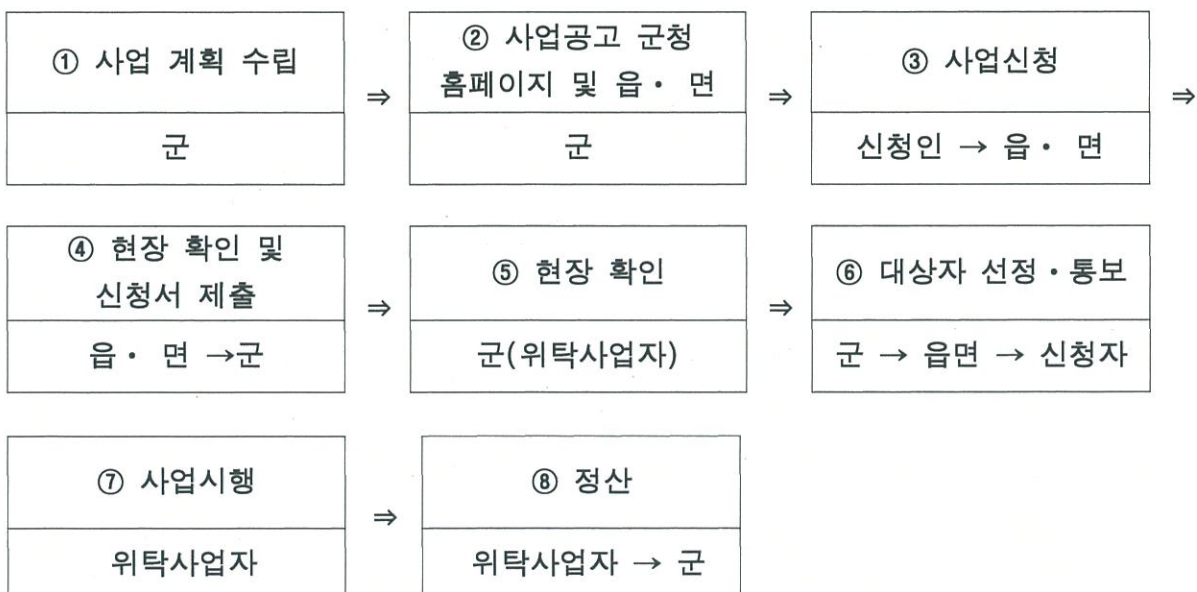
2) 지붕개량의 경우

-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 제외
-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제외 : 건축물 지붕 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(기둥, 보, 지붕틀 각 3개이상 수선 등) 등을 하는 것

3. 추진방법 및 절차

가. 슬레이트철거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: 석면안전협회 위탁

나. 추진절차



4. 제출서류

- 가. 지원신청서 1부
- 나. 사진대지 1부
- 다. 지원동의서 1부
- 라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마.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(건축물 대장, 토지대장 등) 1부

5. 배점 기준표

가.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배점기준표

점수표 선정기준	10	8	6	4
우선순위	사회취약계층 주택 개·보수사업	슬레이트처리· 개량사업	농어촌주택 개량·개보수 사업	빈집정비사업
슬레이트 설치년도	1980년이전	1990년이전	2000년이전	2000년이후
신청자 연령대	70대이상	60대이상	50대이상	40대이하
슬레이트 노후정도	노후되어 슬레이트 비산 및 파손	노후되어 비산의 가능성 있음	노후 되었으나 비산의 가능성없음	보전상태양호

나.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배점기준표

점수표 선정기준	10	7	4
우선순위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

6. 추진일정

- 가. 신청접수 : 2021년 1월 ~ 2월
- 나. 대상선정 : 2021년 3월
- 다. 사업추진 : 2021년 3월 ~ 11월
- 라. 사업정산 : 2021년 12월

7. 기타사항

- 가. 「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지침」 변경될 경우 사업내용(지원금액 등)이 변경가능.
- 나.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다.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사업 신청의 경우 읍·면 산업팀에서 일괄 접수 후 환경관리과와 협의 추진.
- 라. 기타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(☎054-650-6181)로 문의바람.